

각국 제조물책임(PL)법의 특징

자료제공 · 한국PL센터

미 국

(1) 「모델제조물책임법」

미국은 1976년 4월, 포드대통령 시대에 국무성을 중심으로 10개의 성청이 관련된 워킹그룹 「PL에 관한 연방정부성청 태스크포스(Federal Interagency Task Force on Product Liability)」를 결성하고, 일 년반에 걸친 법리론, 산업계와의 영향, PL보험 등의 면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래서 그 조사결과를 정리한 「모델제조물책임법(Model Uniform Production Liability Act)」을 1979년 10월에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독자적으로 PL법 개정·수정을 실시한 주도 있었지만, 모델 자체가 각주에 강제력을 갖는 「연방법」은 아니었으므로, PL문제에 대해 급진적인 사고를 가졌던 주에서는 독자의 PL법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PL법의 국내적 통일이라는 목적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각주에 강제력을 갖는 「연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지금도 의원들 사이에 존재하고, 매년 의원제안으로 제출되고 있지만 그때마다 의회의 찬성을 얻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판례법」 채용국에의 대응책

영국의 법률제도에 기인한 「판례법(관습법)」을 채용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성문법(제정법)」을 채용하고 있는 일본과 달리 과거의 판례가 기준이다. 과거와 같

은 패턴의 사건이 있으면 그 판례의 사고방식이 재판 결과를 좌우한다.

당연, PL에 관해서도 「과거판례」가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미국과 같은 판례법을 채용하고 있는 국가의 PL대응은 판례의 철저한 연구를 빼놓을 수 없다. 「성문법」에 익숙한 일본기업이 기준이 되는 법률이 없어 망설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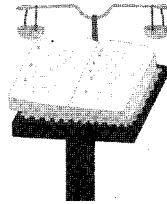
(3) 「엄격책임」을 보급시킨 판례

엄격책임을 보급시킨 판례법은 다음과 같다.

(제조물을 포함한 불법행위법<판례 제402조>)

이용자, 또는 소비자에 대해 그 제품에 결함이 있거나 위험한 상태일 경우에는 그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업체는 그로 인해 야기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은 판례를 조문형태로 재현한 것으로 법률이 아니므로 법적인 구속력은 직접 갖지 않는다. 그러나 권위있는 것으로서 판례법(제2차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중에 기재된 것으로 그 이후의 판결중 가끔 이용되게 되고, 이 「엄격책임주의의 사고방식」의 법리를 각주의 법원이 인용하고 있다. 현재는 모든 주가 이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의 PL문제로 「엄격책임주의」가 기본이 되고 있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EC가맹 12개국

(1) EC <제조물책임>지령

EC의 의사결정기관인 EC각료이사회가 1985년 7월 25일, 결합상품에 대한 책임에 관한 EC에서의 판단을 정리, 그것을 지침으로 채택한 것이 「EC <제조물책임>지령」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지령의 채택에 의해 EC제국은 전통적인 「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사고방식에서 「엄격책임주의」에 근거한 책임법으로 전환하여 발전하게 되었다.

(2) 「EC <제조물책임>지령」이 탄생한 이유

EC위원회가 이 문제를 중시하고 지령으로서 각 가맹국에 보낸 이유로서는 다음의 2가지를 꼽을 수 있다.

- ①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률을 가맹각국의 자유로 해 두면 「제조도입국」과 「비도입국」이 동일시장내에 공존하게 되고 같은 시장내에 서로 다른 제조코스트가 발생해 경쟁조건에 불공평이 발생함과 더불어 구역내의 유통의 저해 가능성을 들 수 있다.
- ② 가맹국간에 소비자보호의 정도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은 시장통합의 목표를 저해하게 된다.

(3) 「EC <제조물책임>지령」의 옵션 항목

EC <제조물책임>지령은 가맹각국이 채용해야 하고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최저한의 기준을 나타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가맹국에 따라서 취급이 다른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특히 지금까지 자국독자의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해 온 각 국가에 있어서는 각각의 국가정서에 맞는 차이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본 지령의 결정에 있어서 채택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여 가맹각국의 판단에 맡긴다고 하는 소위 「옵션항목」이 3가지 있는데 다음과 같다.

- ① 제조물책임의 대상에 “제1차 산물”을 포함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원칙적으로는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 : 프랑스, 룩셈부르크, 스페인)

- ② 개발리스크의 항변을 인정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원칙적으로는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 룩셈부르크)

- ③ 배상금의 상한을 설정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원칙적으로는 설정하지 않는다).

(설정한다 : 독일,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EFTA(구주자유무역연합) 가맹제국

EFTA가맹의 7개국(오스트리아,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스웨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은 향후 EC가맹을 선언하고 있으며, EC <제조물책임>지령 내용에 따른 국내법의 제정을 추진해 왔다. 이미 7개국 모두가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을 끝내고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이외의 5개국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현재,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시행되고 있는 PL법 「TPA(Trade Practices Amendment) Bill 1992」은 1992년 7월 9일에 성립되어 동시에 시행되었다.

이 TPA가 성립할 때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종래의 제조물책임제도에서는 판례법과 그것을 구체화한 「TPA Part V Division 2A」의 근거하에 소비자, 즉 계약에 의해 상품을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과실이 아니라 거래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 판매에 적합하지 않은 것일 것」을 요건으로서 배상책임이 제조자에게 부과되었다.

그 한편으로 직접 상품을 구입한 것이 아닌 사람은 판례법 하에 「제조자측의 과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이러한 종래의 법률적 한계가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된 것은 1986년 4월에 뉴사우스웨일즈 공소심에 내려진 판결이다. 사건은 구입한 탄산음료를 마시려던 어린이가 그 병의 폭발로 인해 큰부상을 입었던 것이었지만 원고인 부친측이 「병의 과실」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구제되지 못하는 결과로 끝나버린 것이다. 이를 매스컴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것이 기폭제가 되어 소비자 사이에 법의 불평등권을 환기, 여론화시켰다.

다음해 제도개정의 기운이 높아지던 중 오스트레일리아 법제심의회(ALRC=Austrarian Law Reform Commission)는 「EC <제조물책임>지령」을 베이스로 한 법안을 발표했지만 결합정의에 관한 이견으로 말미암아 제정이 늦어질 것을 걱정한 정부가 잠정적으로 판단하여 현재의 법률 「TPA, (Bill 2)」이 성립된 것이다.

그러나 「EC <제조물책임>지령」이 1995년에 개정될 것을 예측해 그후 3년 후에 법 운용을 재검토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지역을 수출 대상으로 하는 기업과 공장을 진출시키고 있는 기업은 그 동향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법제화의 움직임은 빠르며 1966년까지 거슬러 갈 수 있다. 같은 해 9월 왕립조사위원회가 뉴질랜드에서의 상해에 관한 보상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고 다음해 12월 25일 「우드하우스·리포트」를 제출했다.

이 보고는 ① 공동체 책임, ② 포괄적인 수급자격,

③ 피해자의 완전한 사회적 갱생, ④ 진정한 보상, ⑤ 운용상 효율 등의 5가지 원칙에서 「24시간 항시 보상 시스템」을 제안했다.

이 보고와 정부의 다성간(多省間)위원회에서 제출된 제도의 운용 코스트를 검토한 「백서」를 함께 검토한 의회는 1972년에 「사고보상법」을 제정, 다음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후 수정이 가해지고 1992년 3월 현재의 PL법에 해당하는 「사고사회복지보상보험법」이 성립되어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뉴질랜드의 PL제도는 다른 나라의 PL법과 달리 「24시간 항시 보상시스템의 구축」이 그 전제되어 있기에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금지되고 있는 PL법이 그 특징이다.

중 국

눈부신 경제발전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중국에서는 1993년 2월 22일, 제7기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제30회 회의에서 중국의 PL법에 해당하는 「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산품질량)법」을 가결하고, 법률로서 제정해 동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 법률의 특징은, 다른 나라의 PL법과 달리 「중국의 사회주의시장을 건설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법률」로서 위치를 부여하고 더 나아가 「이 법률은 중국의 제품품질의 향상활동, 관리활동을 일보 전진시킴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그 서문에 목적을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PL제도중에 ISO-9000시리즈 관련조항을 반영하고 있기에 중국 진출기업은 이 점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